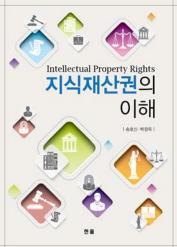
제5주차 1교시



#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알리오안내

경영공시 통계

공공정책자료

Q

인천국제공항공사 9 신용보증기금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전력공사 2 채용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5 한국철도공사 6 한국가:

# 알리오 안내

ALIO 소개 경영공시 제도

공공기관 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 > 알리오안내 >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지정 현황 보도자료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알리오

##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TOP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시장형 16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 기금관리형 13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별공시



주요통계



이용안내



TOP ▲



## 준시장형 20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 위탁집행형 8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

# 경영공시

♠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

# 기관별 공시



항목별 공시	~
기관별 공시	
주요 수시공시	~
친근 공사	_

검색 상세설정

Total: 360 / 본부기관: 340 / 부설기관: 20



기관명	주무기관	기관성격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기타공공기관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기타공공기관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www.gokams.or.kr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www.pola.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공공기관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	기타공공기관	www.ilje.or.kr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기타공공기관	www.kosbi.re.kr
(재)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www.ilem.or.kr

#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 I. 서 설
- 1. 지식재산의 국제적 이용증가
- 오늘날의 **세계가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 불가능
- 이에 선진국들은 **세계에 걸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





# 1. 지식재산의 국제적 이용증가

-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제도를 마련 아울러 외국에서도 자국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 지식재산권 조약들을 체결
-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업무 관장기구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IPO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관으로 조약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기술이전에 노력
- 1993년 12월 15일에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에 관한 여러 사항 -> 지식재산권의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해 가는 기본으로 작용







#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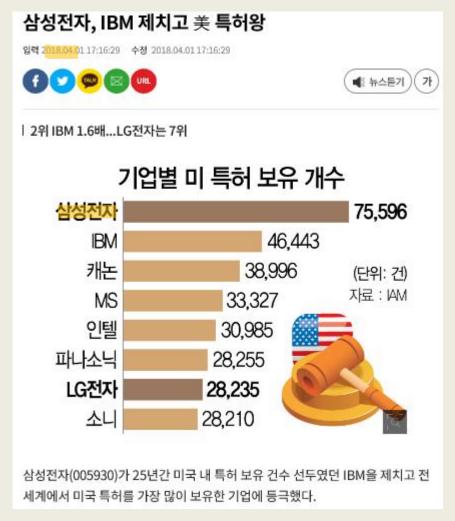
- 지식재산권 보호법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 지식재산권법은 **속지주의원칙**=1국1권리주의(**지식재산권 독립의 원칙**) 원래 각국마다 성립한 지식재산권은 **당해 국가에서만 독립적으로 보호**.
- 그러나 **국제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 오히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자국내에서만 보호받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 거래·교류에 속지주의의 원칙을 수정!!





#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 2012. 3. 까지 미국내 특허보유 톱20 현황





#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삼성전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을 모두 제치고 10만 건에 육박하는 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최다 특허' 1위에 올랐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영국의 특허전문 저널 'IAM'이 최근 발표한 '2021 미국 특허 보유 톱 100'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9만5194건의 누적 특허를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 공개된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이 대상으로 특허권이 만료된 것은 제외했다.

삼성전자의 미국내 유효특허 건수는 1년 전보다 9.16%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IAM에서 미국 특허 랭킹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로 4년 연속 1위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IAM에 따르면 올초 기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출원해 심사를 받고 있는 특허 수는 1만8641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지난해 출원한 것만 8955건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2020년 특허 출원 랭킹에서도 선두에 올랐다.

출원한 특허 중에서 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완료되는 '등록률'을 살펴보면 올초기준 19.6%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 100건을 출원했을 때 실제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는 기술은 약 20개 수준이란 얘기다. 삼성은 미국 외에 유럽·중국에서도특허 보유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IAM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초 기준 유럽에서 누적 1만9945건의 특허를 보유해 4위를 차지했다.

출처: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 유형별 특허 다출원 현황

## " '14년 최다 출원인은 삼성전자"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볼 때, 대기업은 삼성전자, 중견기업은 한라비스테온공조㈜, 중소기업은 넥스다임, 대학은 한국과학 기술원, 공공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1) 파리조약

- 1883년 「파리조약」은 <u>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u>

## - 기본원칙

- →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특허 등의 출원이나 등록 등에 있어 동맹국의 국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
- → **우선권주장의 원칙**: 한 나라에 출원한 후 일정기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은 1년, 디자인과 상표출원은 6월) 내에 <u>타 가맹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최초에</u> 출원한 날로 소급시켜 주는 원칙
- → 특허독립의 원칙(법정지법주의의 원칙): 제3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마다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고 각국에서 획득한 권리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2)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파리협약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978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가입했다.

## - 주된 내용

자국특허청에 출원하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그 나라 국어도 된 <mark>번역</mark>문을 해당국 특허청에 송부하여 특허를 받으면 지정한 나라마다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2)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_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 (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회원국: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2)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2)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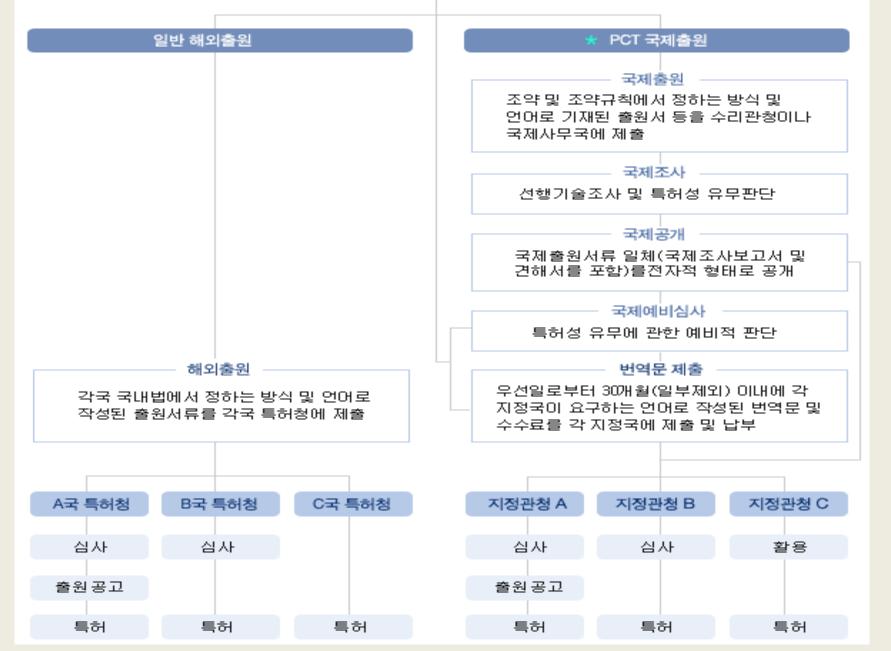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u>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u>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참조기호)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25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25자를 초과하는 문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f desired) (25 characters maximum)

Pct04/001

## Box No. 1 TITLE OF INVENTION

THE SHOES

### (2) Box No. I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가 바람직하며 <u>발명의 설명의 발명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u>해야 함.

#### (3) Box No, II APPLICANT (출원인)

Bos No. I APPLICANT   This person is also inventor.			
Name and address: (Romin name foliated by given name: 19 a le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dusk postal code and name of causes. The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indicated below.)	Telephone No.  State of residence is 82-42-481-5198		
CHULWON CO., LTD. 920 Chungsa-ro, Seo-gu	Facsimile No. 82-42-472-7120		
Daejeon, 30270 Republic of Korea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1–2002–000000–1		
E-mail authorization: Marking one of the check-boxes below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the International Bus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notifications issued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at e-mail address if those offices are willing to do so.     Solution   Compared   Compared			
E-mail address: candy@anumma.com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KR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KR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States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Name and address: (Romin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duck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State of residence is  applicant only		
HONG, Kil-Dong	applicant and inventor		
920 Chungsa-ro, Seo-gu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Daejeon, 30270 Republic of Korea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4-2002-000000-2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EW S

# (3) 부다페스트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1977년 4월 부다페스트 외교회의에서 체결.
   1980년 11월 26일에 그 효력이 발생.
   우리나라는 1987년에 가입.

## - 주된 취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을 요구하는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체약국의 영토 내 혹은 영토 외에 있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3) 부다페스트조약

## 관련 사항 검색해 보기!!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에서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합니다(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7-16호 참고).



# 1. 산업재산에 관한 국제협정

# (4) 기 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는 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에 발효되었다. 표 장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은 1957년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8일에 발효되었다.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등이 있다.







-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